

참고사항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은 고려하지 않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 근로자수	5명	6명	7명	5명	9명
2018년 세액공제		1명 세액공제	2018년분 추가공제	㉠ 2018년분 추가공제배제	
2019년 세액공제			1명 세액공제	㉡ 2019년분 추가공제배제	㉢ 2019년분 추가공제배제(적용)
2020년 세액공제				㉣ 세액공제 불가	추가공제 불가
2021년 세액공제					㉤ 4명 세액공제

-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8년 상시 근로자 수(6명)에 비하여 1명 감소하였으므로 3차년도 2018년 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9년 상시 근로자 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차년도 2019년 분 추가공제와 3차년도 2019년분 추가공제를 배제한다. 2021년에 비록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도 추가공제는 배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에 2019년분 추가공제 적용한다.
- ㉢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가 2019년 상시 근로자 수(7명)에 비하여 2명 감소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 2021년 상시 근로자 수(9명)가 2020년 상시 근로자 수(5명)에 비하여 4명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세액공제는 4명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정세액은 고려하지 않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상시 근로자 수 (청년 근로자 수)	5명 (0명)	6명 (1명)	8명 (2명)	9명 (0명)	10명 (3명)
2018년 세액공제		청년의 세액공제 청년 세액공제	2018년분 청년의 및 청년 추가공제	㉠ 2018년분 청 년의 추가공제 적 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2019년 세액공제			1명 청년의 세액공제 1명 청년 세액공제	㉡ 2019년분 청 년의 추가공제 적 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 2019년분 청 년의 추가공제 적 용, 청년추가공제 배제(적용)
2020년 세액공제				㉣ 1명 청년의 세액공제	㉤ 2020년분 추가공제
2021년 세액공제					㉥ 1명 청년 세액공제

-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6명)보다 3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1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이 때에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9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배제(2020년 2021년 과세연도)한다. 비록 2021년에 최소 세액공제받은 과세연도인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도 추가 세액공제는 배제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청년외 상시근로자 관련 추가 세액공제는 적용한다.
- ㉢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는 2019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8명)보다 1명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2명 감소하였으므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3명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 1명에 대한 2020년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10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 과세연도에 2020년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10명)는 2020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9명)보다 1명 증가하였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였으므로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2명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2021년 과세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 수 1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 예외적으로 2020년 추가납부세액 계산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2019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21년에 2019년분 추가공제 적용한다.(청년외 추가공제 적용, 청년추가공제 배제)

➡ **수도권 내·외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서면법령해석법인2020-4043, 2020.12.14.)**

수도권 내·외에 위치한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수도권 내·외 모두 증가)한 경우로서 수도권 내·외를 포함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수도권 내·외를 구분하여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되, 수도권 외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하여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VII. 고용감소 추가납부세액(원칙)

「VI. 2.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추가납부할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7 ⑥)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geq$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4명	4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2명	18명	8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 2020년 고용중대세액공제액 = 3명 $\times$ 700만원 + 5명 $\times$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times$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times$ 1,100만원 = 55,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3명) $\times$ (1,100만원 - 700만원) + 3명 $\times$ **1,100만원 = 37,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begin{array}{l} \text{최초로 공제받은} \\ \text{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 \text{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text{인원 수}^{\text{㉠}} \end{array} \times \text{①금액} + \begin{array}{l} \text{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 \text{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 \text{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text{인원 수}^{\text{㉡}} \end{array} \times \text{②금액}$$

-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	수도권내	수도권밖 [㉠]	수도권내	수도권밖 [㉠]
①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금액(청년 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geq$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3명 증가	11명	1명 증가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5명 증가	4명	4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u>10명</u>	18명	8명 증가	18명	8명 증가	15명	3명 감소

- ①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 $\times$ 700만원 + 5명 $\times$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times$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times$ 1,100만원 = 55,000,000원
- ②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times$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times$ 1,100만원 = 55,000,000원
- ③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4명-3명) $\times$ (1,100만원 - 700만원) $\times$ 2 + 3명 $\times$ 1,100만원 $\times$ 2 = 74,000,000원

②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참고사항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3명 증가	8명	2명 감소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5명 증가	7명	1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u>10명</u>	18명	8명 증가	18명	8명 증가	<u>15명</u>	3명 감소

- ①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 $\times$ 700만원 + 5명 $\times$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times$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times$ 1,100만원 = 55,000,000원
- ②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times$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times$ 1,100만원 = 55,000,000원
- ③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18명보다 3명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2명 $\times$ 700만원 $\times$ 2 + 1명 $\times$ 1,100만원 $\times$ 2 = 50,000,000원

나.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① × (①금액 - ②금액) × 공제횟수^②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②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

「①금액」 및 「②금액」은 기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수도권내	수도권밖 ^①
①금액(청년)	400만원	400만원 (21년 22년: 500만원)	800만원	800만원 (21년 22년: 9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21년 22년: 1,300만원)
②금액(청년 외)	0원		450만원		700만원	770만원

※ ① 2021년 및 2022년 수도권 밖 증가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였으며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함

☞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수도권내 중소기업 가정)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원수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청년외	7명	10명	3명 증가	10명	3명 증가	12명	2명 증가
청년	3명	8명	5명 증가	8명	5명 증가	7명	1명 감소
전체상시근로자수	10명	18명	8명 증가	18명	8명 증가	19명	1명 증가

- ㉠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 3명 × 700만원 + 5명 × 1,100만원 = 76,000,000원
- 청년외 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가세액공제된다.
- 청년외 추가세액공제분 = 3명 × 700만원 = 21,000,000원
 - 청년 추가세액공제분 = 5명 × 1,100만원 = 55,000,000원
- ㉢ 20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18명보다 1명이 증가하였으나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 중 다음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 납부할 세액 = 1명 × (1,100만원 - 700만원) × 2 = 8,000,000원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회계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청년 + 장애 + 60세이상)	청년외	청년등(청년 + 경력단절)	청년외
2020년	6.00	1.83	4.16	2.58	3.41
2019년	4.25	1.33	2.91	1.33	2.91
증감	1.75	0.50	1.25	1.25	0.50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회계연도	상시근로자수	청년등 (청년 + 장애 + 60세이상)	청년외	청년등(청년 + 경력단절)	청년외
2019년	4.25	1.33	2.91	1.33	2.91
2018년	2.41	1.00	1.41	1.00	1.41
증감	1.84	0.33	1.50	0.33	1.50

1) 2019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청년등 세액공제 = $0.33 \times 11,000,000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50 \times 7,000,000 = \underline{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3,196,452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25,000,000 \div 1.33 \times 9.584\% = 1,801,503$ ㉡ 청년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5,000,000 \div 2.91 \times 9.584\% = 3,446,301$ ㉢ 청년등 세액공제 = $0.33 \times 1,801,667 \times 100\% = 594,495$ ㉣ 청년외 세액공제 = $1.50 \times 3,446,615 \times 50\% = 2,601,957$

2) 2020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28,38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4,250,000

㉠ 청년등 세액공제 = $0.50 \times 11,000,000 = 5,50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25 \times 7,000,000 = 8,750,000$ • 2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상시근로자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5,000,816

• 1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804,364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40,000,000 \div 1.33 \times 9.584\% \times 1,700,000 \div 2.58 = 826,977$ ㉡ 청년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10,000,000 \div 3.41 \times 9.584\% = 3,082,573$ ㉢ 청년등 세액공제 = $1.25 \times 826,977 \times 100\% = 1,033,721$ ㉣ 청년외 세액공제 = $0.50 \times 3,082,573 \times 50\% = 770,643$

• 2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3,196,452

상시근로자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594,495

㉡ 청년외 세액공제 = 2,601,957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 = $10,000,000 \times 30\% = 3,000,000$

3) 2021년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 32,890,000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4,510,000

2021년 상시근로자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수 한도)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함

㉠ 청년등 세액공제 = $0.41 \times 11,000,000 = 4,51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0

• 2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4,250,000

2021년 상시근로자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5,50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8,750,000

• 3차년도 세액공제(2019년) = 14,130,000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19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0.33 \times 11,000,000 = 3,630,000$

㉡ 청년외 세액공제 = $1.50 \times 7,000,000 = \underline{10,500,000}$

②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2,203,018

• 1차년도 세액공제(2021년) = 398,65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외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므로 청년등 세액공제만 적용함

㉠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8,000,000 \div 3.66 \times 9.584\% \times 2,000,000 \div 3.66 = 972,327$

㉡ 청년등 세액공제 = $0.41 \times 972,327 \times 100\% = \underline{398,654}$

㉢ 청년외 세액공제 = 0

• 2차년도 세액공제(2020년) = 1,804,364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증가하였으므로 2020년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공제함

㉠ 청년등 세액공제 = 1,033,721

㉡ 청년외 세액공제 = 770,643

③ 경력단절여성고용세액공제(2차) = $18,000,000 \times 30\% = 5,400,000$

제12절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I. 적용대상

내국법인에 연구·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⁷⁹⁾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79)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